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0
----------	-----

제출연월일 : 2009. 6. 8.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편성 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9. 5. 8. ~ 5. 28. / 접수 의견 1건(반영 1건, 별첨)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대전광역시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또는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 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자지원 순위) 시장은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2.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학재단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자
3. 교육 또는 장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자
4. 시민단체 대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육담당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 제6조(구성)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구성에 있어 대전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전국적 추세이고 학자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 취

교육기본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07.12.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2009.4.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란 대학생의 학업성과 전공분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및 대학생·학부모의 가계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3.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1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적용)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 12. 31 조례 제1328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

제3조(일비)①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36호><개정 2002. 05. 24 조례 제3108호>

[본조전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